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01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정을호·강선우·조승래

백승아 · 김문수 · 박용갑

이훈기 • 전용기 • 김태년

김영진 • 윤후덕 • 이학영

박정현 · 홍기원 · 강준현

백혜련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정년) ①・② (생 략)	제47조(정년)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
	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
	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
	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